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제 3 호	제 2 차	1991. 1. 14	총 재 김 건

의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제59조

제의취지 금융기관이 신규 취급하게 되는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하여 예금지급
준비금 보유의무를 부과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36
45

< 참 고 사 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취

한국은행법 제57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생 략)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u> ,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0% 2.~3. (생략)	제2조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u> ,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0% 2.~3. (현행과 같음)	-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해 3.0%의 지준율 적용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제5조 (생략)	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규정은 1991.1.23(1월 하반기 요지준적립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